

# 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656 / 전송 731-6956  
 처리부서 : 세정과 (시정본관 3층) 담당 전호선

문서번호 세정 13388-820  
 시행일자 1995.11.22

취급		시	장
보존		- 1 -	
과장	[인]		
과장	[인]		
세외수입계장	38		
기안	전호선 [인]	결재 [인]	
		협조	

수신 내부결재  
 참조

고시공고  
 1995.11.22  
 11935  
 329호

제목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내무부 공가 13388-618(95.9.15)의 관련임.
  2.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별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    - 가. 입법예고안 : 별첨
    - 나. 입법예고기간 : 95.11.25~95.12.15(20일간)
- 첨부 :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.

**( 제 2 안 )**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가. 공고안 : 별첨
- 첨부 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.

서울특별시  
 법제사무처리규칙  
 제13조  
 95.11.22  
 공

세 정 과 장

083

2-1

AS

( 제 3 안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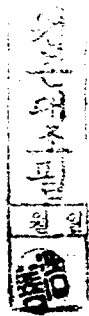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처참조

제목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1. 내무부 공기 13388-618(95.9.15)의 관련임.
2.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본부장, 사업소장 및 각과장은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95.12.15까지 세정과장 참조 제출하기 바라며 기일내 제출의견이 없으면 별도의견 없는것으로 처리할 것임.

가. 의견조회사항 : 별첨

첨부 : 의견조회 사항 1부 끝.



서울특별시장

수신처 : 전부서

084

2-2

84

# 입 법 예 고

서울특별시	사무처	법제처
담당자	김재철	사무담당관
Ono	전결	Ono

서울특별시 공고 제 1995-329호

##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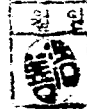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5. 11. 25

서울특별시장

### 1. 개정취지

-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(법률제4734호 94.17)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, 복사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 개인정보 보호자료에 대한 수수료징수근거 규정을 신설하고
- 장기미조정된 원가이하의 수수료액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



### 2. 주요골자

가. 개인정보 보호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

- 개인정보 문서의 열람(1건1회) 150원
- 개인정보 문서의 정정신청(1건) 150원
- 개인정보 문서의 복사(1매) 150원

085

AT

나. 장기미조정, 원가이하 수수료액의 일부조정 : 별표 1

3. 의견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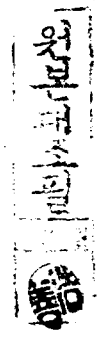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를 세워서작성)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세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정과(전화 731-6656~9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[ 표 1 ]

## 수수료액의 조정내역

민원구분	기준	조정 수수료액	비고
<b>1. 제증명발급사항 (22종)</b>			
· 화재증명	1 건	650	
· 수출입원자재소요량증명	"	2,100	
· 매장·화장에 관련증명	"	400	
· 유채결본 증명	"	3,300	
· 관지에정지 변경신청	"	500	
· 채비지 분할신청	"	500	
· 토지대금 완납증명	"	500	
· 물품납품 실적증명	"	500	
· 공사준공기술응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증	"	500	
· 일반경쟁입찰장가자격 등록증명	"	500	
· 돌출 또는 공사사실증명	"	400	
· 자동차 제증명	"	1,200	
· 공부의 등본초본, 하부원본	"	500	
· 기타사실공부등예외해발급하는 증명	"	500	
· 각종 공부 열람	1시간	150	
· 행정정보문서 또는 필름의 열람	1건 1회	150	
· 행정정보 문서의 복사	1매	150	
· 행정정보 마이크로필름의 복사	"	150	
· 행정정보 컴퓨터인력자료의 인쇄	"	150	
· 개인정보 문서의 열람	1건 1회	150	
· 개인정보 문서의 열람신청	1건	150	
· 개인정보 문서의 복사	1매	150	

행정정보서비스센터  
 행정정보서비스센터  
 행정정보서비스센터

21

민원구분	기준	조정 수수료액	비고
2. 각종인허가 및 신고등사항 (12종)			
·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인가	1 건	900	
· 시유재산대부(계속대부)신청	·	950	
· 시유재산매수신청	·	950	
· 체비지 영의변경 신청서	·	900	
· 토지사용(체비지) 승락서	·	900	
· 체비지확이서(대부, 매수, 주소변경 소유권변경)	·	900	
· 체비지소유자확인원	·	750	
· 입찰참가 신청	·	650	
·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			
-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	1 적	1,600	
-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, 10인이하의 배	·	2,100	
-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, 20인이하의 배	·	2,900	
-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	·	3,600	

원본대조필